

No. 5

행정 명령

**MEDICAID 재설계 설립 팀**

뉴욕주는 Medicaid에 1인당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지출하며 가입자 당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지출하므로;

전체 보건 시스템 질에 있어 뉴욕은 전국에서 21번째이고 회피가능 병원 이용 및 비용은 50번째이므로;

뉴욕의 Medicaid 프로그램은 일관성없고, 제멋대로인 관리 구조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으므로;

뉴욕의 Medicaid 지급 시스템은 가끔 높은 가치, 비용 효율, 품질 의료의 조달에 있어 재정적 억제력을 창조하므로;

뉴욕주는 2011-12 회계년도에 균형잡힌 예산 성취에 심각한 재정적 도전을 대면하므로;

뉴욕주의 현재 회계 억제는 Medicaid 지출의 특정한 회계 감소를 필요로 하므로; 그리고

이것은 주목할 만한 공공 중요성에 의해 주에서 Medicaid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재구조를 통해 건강 결과, 유지가능한 비용 통제 및 더 효율적인 관리 구조 등의 측정할 수 있는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;

이제, 그러므로, 나,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, 헌법 및 뉴욕주 법에 의해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, 다음의 사항을 명령합니다:

**A. 정의**

여기에서 사용된대로,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뜻이 적용됩니다:

1. “주 기관 (State agency 또는 agency)”은 모든 주 대행기관, 관공부, 부서, 국, 위원회, 또는 협의회 등을 뜻합니다.

2. “공공기관” 또는 “당국” (Public authority 또는 authority)은 뉴욕주 하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존재하는 공공 권력 단체 또는 공공 비영리 단체를 뜻하며, 주지사에 의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일원이 임명받아 뉴욕주 공무원집행자의 수완으로 일합니다. 이는 특정 공공기관 또는 공공 비영리 협회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국제 당국 또는 공공 비영리 기관은 제외합니다.

3. “주 직책자 및 직원 (State officer and employee)”은 공무원법 섹션 73에 명시된 뜻을 가집니다.

## **B. Medicaid 재설계 팀**

1. Medicaid 재설계 팀 (이하, "팀")이 설립되어 주지사에게 지도를 제공하고 또 조언을 할 것입니다.

2. 주지사는 팀의 투표 구성원을 25명까지 지명할 수 있습니다. 팀의 구성원은 다음을 포함합니다: 연관된 전문성이 있는 주 직책자 및 직원; 뉴욕주 의회원 2명, 한 명은 의회 대변인 추천자, 한 명은 의회 소수당 대표 추천자; 뉴욕주 상원의원 2명, 한 명은 임시 상원의장 추천자, 한 명은 상원 소수당 대표 추천자; 그리고 다음의 분야의 전문 이해자:

- a. 의료 조달;
- b. 의료 보험;
- c. 의료 인력;
- d. 경제;
- e. 사업;
- f. 구매력; 그리고
- g. 그 외 연관 분야.

3. 공석은 주지사에 의해 채워지며, 주지사는 팀에 필요한대로 투표인사 및 비투표인사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. 팀의 일원들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.

4. 주지사는 팀의 구성원 중에서 팀장 또는 공동 팀장을 지명할 것입니다.

5. 주지사는 뉴욕주 Medicaid 대표인을 팀의 상임이사로 지명할 것입니다.

6. 예산 책임자는 *직무상*, 팀의 비투표 일원이 됩니다.

7. 임명된 팀원의 대부분은 정원수를 이루게 되고, 모든 팀의 추천은 주지사의 임명을 받은 총 회원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8. 팀은 크고 다양한 종류의 기관,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참여하고 얻도록 해야 합니다.

## **C. 팀과의 협력**

1. 뉴욕주의 모든 기관 또는 당국은 팀에 뉴욕주 시설 사용 등을 포함하여 이 행정 명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력 및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.

2. 팀의 업무 이행에 필요한 직원 지원은 기관 및 당국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(이 또한 그와 같은 당국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).

## **D. 의무 및 목적**

1. 팀은 Medicaid 프로그램에 관한 추천안을 만들고 또 그것의 전체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Medicaid 프로그램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. 이는 Medicaid 프로그램의 재설계를 위한 특정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측정을 포함하여 Medicaid 지출의 특정 예산 삭감을 충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 팀의 검토 및 추천안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:

- a. Medicaid 절약 및 품질 향상을 가져온 뉴욕주 및 전국의 기존 프로그램;
- b. Medicaid 비용의 불균형 배분을 소모하는 뉴욕주의 기존 프로그램;

- c. 뉴욕의 Medicaid 프로그램의 회계 및 의료 조달 모델 강화를 도울 연방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 (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) 기회;
- d. Medicaid 서비스 전체 양, 서비스 장소, 및 수혜자 그룹 활용;
- e. 복합 건강 상태를 가진 수혜자들의 의료 관리 향상을 위한 새 의료 모델;
- f. 오래되고, 쓸모없거나 Medicaid 프로그램의 근대화를 방해하는 기존의 규정;
- g. Medicaid 프로그램 내의 혜택, 비용,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방정부와의 잠재적 협동 노력; 그리고
- h. 단기적인 해결책 및 장기적인 조직적 변화 성취를 위해 Medicaid의 가능한 재편성.

2. 팀의 방향에 있어, 상임이사는 팀의 목적,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, 및 그러한 참여 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줄 것입니다. 이해당사자와의 모임은 뉴욕주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그들의 전문과 관심 분야와 일치하는 특정 분야 그룹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.

3. 상임이사는 이해당사자와 그 외 관심당사자에 의한 제안 및 추천에 대한 한도를 제공할 것입니다. 예산부와 협의 후, 상임이사는 그와 같은 제안이 실행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, 그럴 경우에는, 그로 인해 실현될 수 있는 절약도 평가합니다.

4. 팀은 늦어도 2011년 1월 7일에 그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. 2011년 3월 1일 또는 그 전에, 팀은 2011-12 뉴욕주 회계년도를 위한 예산 과정 고려사항에 대해 결정한 결론 및 추천안의 초기 보고서를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팀은 그 뒤 계속적인 평가에 대해 분기별 보고를 해야 합니다. 팀은 늦어도 2011-12 주 회계년도 전에 최종 추천안을 주지사에게 제출하고, 그와 동시에 업무를 종결하고 모든 책임과 의무로부터 해산될 것입니다.

이천 십일년 일월 오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

권한 및 주 인사의 권한에 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실장